

(붙임 2)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지원대상 대출실적)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p>제2조(지원대상 대출실적)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운전자금대출 및 원화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운전자금대출 및 원화시설자금대출 실적 	- 지구 수정
<p>제3조(지원대상 중소기업)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7. 전입기업 8. 수출관련기업 9.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10.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1. 명절·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 12. 기타 지원기업 13.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p>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지원대상 중소기업)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별표 1>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7. 전입기업 8. 수출관련기업 9.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10.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1. 명절·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 12. 기타 지원기업 13.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p align="right"><삭제></p>	- 항 구분 삭제 - 지구수정 - 제2항을 삭제하고 동 내용을 제1항 내용에 포함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특별지원부문) ① 제3조 제1항 제13호(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④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배정한다.</p>	<p>제5조(특별지원부문) ① 특별지원부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기업 2. 제3조 제13호(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정대상에 포함) <p>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366일)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실적으로 대상으로 지원한다.</p> <p>③ 특별지원부문은 지원대상 대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p> <p>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으로 간주)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⑤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전액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특별지원부문 대상대출을 제7조의 일반지원부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된 대출의 배정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p>	<p>- 특별지원부문 대상지원업체의 명확화</p> <p>- 제1호의 조건 신설</p> <p>- 제3항의 내용을 제1항 제3호로 올림</p> <p>- 제2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분리</p> <p>- 만기 1년의 기준 명확화</p> <p>- 금융기관 대출취급액기준 명시</p>
<p>제6조(전략지원부문) ① 제3조 제1항 제6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제10호(농림수산업 관련기업)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인천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p>② 전략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서 정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인천광역시로부터</p>	<p>제6조(전략지원부문) ① 전략지원부문은 제3조 제6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제10호(농림수산업 관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중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p> <p>② 전략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1>에서 정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p>	<p>- 인용 조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p> <p>- 지구수정</p> <p>- 현행 제4항을 제5항으로 내리고 '금융기관 신청'에 따르던 것을 '본부장이 정한'으로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대출 실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p>③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④ 전략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배정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p>	<p>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대출 실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p>③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p> <p>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0억원, 대출취급액 기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억원으로 간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전략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전액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지원부문 대상대출을 제7조의 일반지원부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된 대출의 배정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p> <p>⑥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명시 - 구문 명확화 -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분리하고, 제5항을 신설 - 현행 제4항의 '금융기관 신청'에 따르던 것을 '본부장이 정한바'로 수정 - 항번호 수정 - 인용 조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특별지원부문) 및 제6조 제1항(전략지원부문)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p> <p>② 일반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 <p>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을 적용한다.</p> <p>④ 제5조 제3항은 일반지원부문의 배정에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⑤ 번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⑥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본부 중소기업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에 재배정한다.</p>	<p>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일반지원부문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중 제5조(특별지원부문) 및 제6조(전략지원부문)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제5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 다만, 제5조 제5항 및 제6조 제5항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일반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 <p>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p> <p>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으로 간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라 배정된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6조 제4항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⑤ 제5조 제5항, 제6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본부 중소기업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일반지원부문에 재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원업체 명확화 및 인용 조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 현행 제4항을 제1항안에 포함 - 현행 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분리하고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명시 - <별표2>에 포함된 현행 5항을 삭제 - 제6항을 제5항으로 올림 - 지구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 본부장은 제3조 제1항 제11호(명절·재해자금 필요기업 등) 및 제12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 본부장은 제3조 제11호(명절·재해자금 필요기업 등) 및 제12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 인용 조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p>
<p>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 2.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4.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6.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7.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8.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p>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 2.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4.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5.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7.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8.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p>- 호의 순서 변경</p>
<p>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산정한 당월중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p>	<p>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당월 중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p>	<p>- 자구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 배정한도 감축 <p style="text-align: center;">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위규사유</th> <th style="width: 30%;">한도감축 배수</th> </tr> </thead> <tbody> <tr> <td>대기업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td> <td>2.5배 이내</td> </tr> <tr> <td>폐업업체에 대한 대출</td> <td>1.5배 이내²⁾</td> </tr> <tr> <td>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td> <td>2.0배 이내</td> </tr> </tbody> </table> <p>주: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p> <p>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p>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²⁾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p>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회수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 배정한도 감축 <p style="text-align: center;">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위규사유</th> <th style="width: 30%;">한도감축 배수</th> </tr> </thead> <tbody> <tr> <td>제10조 제1호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 제10조 제3호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된 대출</td> <td>2.5배 이내</td> </tr> <tr> <td>제2조의 지원대상 대출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제10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제10조 제2호에 따른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td> <td>2.0배 이내</td> </tr> <tr> <td>제10조 제4호에 따른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td> <td>1.5배 이내¹⁾</td> </tr> </tbody> </table> <p>주: <삭제> 1)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p> <p>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규제재감축분의 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배정대상</th> <th style="width: 85%;">배정대상 월에 제재조치 대상이 아니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배정액이 있는 금융기관</th> </tr> </thead> <tbody> <tr> <td>배정액</td> <td>각 배정대상의 배정 대상월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 배정액의 배정대상별 구성비에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규제재감축분의 총합을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제10조 제1호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 제10조 제3호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된 대출	2.5배 이내	제2조의 지원대상 대출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제10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제10조 제2호에 따른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제10조 제4호에 따른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¹⁾	배정대상	배정대상 월에 제재조치 대상이 아니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배정액이 있는 금융기관	배정액	각 배정대상의 배정 대상월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 배정액의 배정대상별 구성비에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규제재감축분의 총합을 곱한 금액	<p>- 자구수정</p> <p>- 위반 사유의 구체화, 자구수정</p> <p>- 주식1번 삭제</p> <p>- 위규제재감축분의 배정표 신설</p>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²⁾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제10조 제1호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 제10조 제3호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된 대출	2.5배 이내																					
제2조의 지원대상 대출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제10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제10조 제2호에 따른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제10조 제4호에 따른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¹⁾																					
배정대상	배정대상 월에 제재조치 대상이 아니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배정액이 있는 금융기관																					
배정액	각 배정대상의 배정 대상월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 배정액의 배정대상별 구성비에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규제재감축분의 총합을 곱한 금액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2022. 7.></p> <p>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 규정</p> <p>- 경과조치 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산코드</th> <th>지원부문</th> <th>선정기준¹⁾</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A4</td> <td>녹색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td> </tr> <tr> <td>A8</td> <td>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td> <td>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1>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A11</td> <td>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A16</td> <td>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²⁾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td> </tr> </tbody> </table> <p>주: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인 것으로 제한</p> <p>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p>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생략)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1>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생략)			A11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생략)			A1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²⁾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산코드</th> <th>지원부문</th> <th>선정기준¹⁾</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A4</td> <td>녹색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설비인증)을 받은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등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 </td> </tr> <tr> <td>A8</td> <td>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td> <td>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1>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A11</td> <td>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A16</td> <td>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td> <td>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²⁾</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td> </tr> </tbody> </table> <p>주: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p> <p>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매출액,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p>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현행과 같음)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설비인증)을 받은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등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1>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현행과 같음)			A11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현행과 같음)			A1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²⁾</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관련 녹색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p> <p>- 선정기준 명확화</p> <p>-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지원부문에 추가</p> <p>- 선정기준 명확화</p> <p>- 자구수정</p> <p>- 주된 사업의 선정기준 변경</p>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생략)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1>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생략)																																																						
A11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생략)																																																						
A1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²⁾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현행과 같음)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설비인증)을 받은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등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1-1>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현행과 같음)																																																						
A11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현행과 같음)																																																						
A1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²⁾</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1-1>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			<별표 1-1>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							
산업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산업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미래 성장 유망 산업	바이오 산업	화장품 제조업	20423	바이오 산업	화장품 제조업	20423	- 의약품 제조업 통합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의약품 제조업	21210, 21220, 21230				
		한의원약품 제조업	2122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11, 70112, 70113, 70119, 70130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관광 산업	(현행과 같음)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물류 산업	도로화물 운송업		49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해상운송업		501(50111, 50121 제외)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항공운송업		51(51100 제외)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보관 및 창고업	521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관광 산업	(생략)	화물취급업	5294						
	제조업내 5대 업종	(생략)	(생략)	항공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 해상운송업 및 항공운송업 에서 운송여객업 제외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2322			
						로봇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의2에 의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280	-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 인 항공, 로봇분야를 미래 성장유망산업에 편입
							제조업내 5대 업종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별표 2>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p>		<p><별표 2>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p>		<p>- 순서를 코드 오름차순으로 변경</p> <p>- 주점업 통합</p> <p>- 전문서비스업 분야를 제외 업종에 추가</p> <p>- 수의업을 제외업종에 추가</p> <p>-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을 제외업종에 추가</p> <p>- 보건의업을 제외업종에 추가</p> <p>- 미용업 통합 및 분류 변경</p> <p>- 마사지업의 분류를 변경</p> <p>-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업종에 추가</p> <p>- 지원제외업종 포함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리방법 명확화</p> <p>- 그 외 추가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업종 명시</p>
업 종 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업 종 명 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주 점 업	5621 주점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주 점 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65 보험 및 연금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56219 기타주점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노 래 방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무 도 장	91291 무도장운영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도 박 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7151 회사본부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수의업	731 수의업	
	미 용 업	96111 미용업	인력공급업 ²⁾	7512 인력공급업
		96112 두발미용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 조사 및 추심대행업
96113 피부미용업		보건업	86 보건업	
96119 기타미용업		노 래 방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안 마 업	96122 마사지업	무 도 장	91291 무도장운영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도 박 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65 보험 및 연금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미용업 및 미용업	
인력공급업 ¹⁾	7512 인력공급업		96122 마사지업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p>주: <신설> 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시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 <신설></p>		<p>주: 1) 해당 업체가 지원제외업종의 다른 지원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시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 3) 등록된 업종코드에 관계없이 도박, 성인용품 등 불건전,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의 경우 제외</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 대출내역에 이차보전 금리 항목을 추가하고 주석에 기재방법 안내
신청 정보	업체 현황	대출내역										신청 정보	업체 현황	대출내역												
(생략)		자금 구분 ¹¹⁾	취급 점포명	취급점 소재지 ⁷⁾	대출일 ¹²⁾	만기일 ¹³⁾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¹⁴⁾	채권 보전 ⁹⁾	신설	(생략)			자금 구분 ¹¹⁾	취급 점포명	취급점 소재지 ⁷⁾	대출일 ¹²⁾	만기일 ¹³⁾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¹⁴⁾	채권 보전 ⁹⁾	<u>이차보전 금리¹⁶⁾</u>		
주: 1) ~ 15) (생략) <신설>													주: 1) ~ 15) (생략) 16) 이차보전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이차보전 금리를 기재													